

해 외 건 설 협 회

(우)04513 /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, 13층
사업관리실 실장 이용광 / 담당 과장 김성진 / 전화 02-3406-1108 / Fax 02-3406-1127

문서번호 (사업)제1호

시행일자 2018. 1. 2

수 신 2017년 하반기 시공중공사 보유업체 대표이사

참 조 해외사업 담당임원

제 목 2017년 하반기 시공상황보고 안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, 동 법 시행령 제17조, 동 법 시행규칙 제15조 의거, 다음과 같이 2017년 하반기 시공상황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보고기간 : 2018. 1. 1 ~ 1. 30(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)

나. 보고방법 : 온라인(해외건설e정보시스템 <http://yes.icak.or.kr>)

다. 대상공사 : 해외건설e정보시스템에서 확인

라. 문 의 : 사업관리실 김성진 과장(02-3406-1108)

마. 유의사항

- 시공 또는 미수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타절등록, 미수금 대손처리 등을 통해 시공상황보고 최종 정리
- 준공된 해외공사는 시공상황보고 후 준공보고를 통해 상황보고 종결

※ 보고를 누락하거나 보고내용이 실제와 상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협회의 실적확인 발급 시 예기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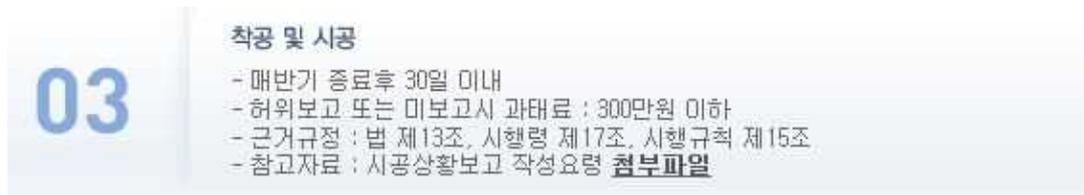
붙 임 : 시공상황보고 참고사항. 끝.

해 외 건 설 협 회 장

시공상황보고 참고사항

1. 보고 대상공사 조회·등록 및 보고 절차

- 1) 해외건설e정보시스템(<http://yes.icak.or.kr>) 접속
- 공인인증서 필요. 회원가입 후 온라인 상황보고
- 2) 메인메뉴 '해외공사상황보고' - '시공상황보고' - '시공상황보고 접수' 접속
- 3) 하단의 '시공상황등록' 버튼 클릭(타절된 공사는 '타절등록' 버튼 클릭)
- 4) 화면 내에서 보고대상 공사목록 확인(반드시 모두 보고)
- 5) 공사별 내용 작성 후 저장
- 6) 공사별 내용 확인 후 '작성완료' 버튼 클릭. 커버페이지 및 법정양식 인쇄
- 7) 법정양식 날인 후 전자팩스(02-3406-1150~57) 송부 또는 'SCAN'클릭 - '파일첨부'클릭 - 날인한 법정양식 스캔파일 찾아서 선택 - '협회전송'클릭
- 8) 전송 후 반드시 등록공사의 「상태」가 '제출'인지 확인
※처리된 공사는 '시공상황보고완료'에서 조회 및 열람 가능
※항목별 신고요령은 '해외공사상황보고' - '공사상황보고 안내' - '첨부파일'클릭



03 **착공 및 시공**

- 매반기 종료후 30일 이내
- 허위보고 또는 미보고시 과태료 : 300만원 이하
- 근거규정 : 법 제13조, 시행령 제17조, 시행규칙 제15조
- 참고자료 : 시공상황보고 작성요령 **첨부파일**

2. 장기 시공지연, 타절 등으로 시공상황을 중도에 종결해야 하는 경우

- 1) 해외건설e정보시스템(<http://yes.icak.or.kr>) 접속
- 2) 메인메뉴 '해외공사상황보고' - '시공상황보고' - '시공상황보고 접수' 접속
- 3) 하단의 '타절등록' 버튼 클릭
- 4) 타절 시점까지의 내용으로 작성 후 저장
- 5) 타절보고 공문 작성하여 첨부
- 타절 사유 및 증빙자료 첨부(증빙자료 없는 경우 '증빙자료 없음' 명시)
- 미수금 또는 유보금이 남아있으나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대손처리여부 기재
- 6) '시공상황등록' 절차 6~8과 동일

3. 준공된 공사가 시공상황보고 대상에 계속 남아있는 이유

- 1) 준공보고 누락, 공사대금 잔여(준공·타절보고를 했으나 미수금, 유보금 등 보유), 미해결 클레임 등이 있는 경우
- 2) 준공보고 또는 시공상황보고를 통해 종결 가능

4. 기타 주의사항

- 1) '시공상황보고 접수' 게시판에서 반드시 '제출' 「상태」 확인
- 2) 「상태」가 '작성중', '작성완료' 또는 '보완요청'인 경우 미보고 처리됨